

의안번호	2202661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D263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관련 규정을 변경·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1,269억 5,300만원(연평균 253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청원경찰 직급, 승진, 보수	21,800	23,177	25,107	27,397	29,471	126,953	25,3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은 청원감, 청원위, 청원사, 청원장, 청원경으로 구분함(제1항) 청원주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청원경에서 9년 이상 근속자는 청원장으로, 청원장에서 8년이상 근속자는 청원사로, 청원사에서 7년 이상 근속자는 청원위로, 청원위에서 6년 이상 근속자는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함. 다만, 청원주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청원경찰 등을 특별히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2항) 청원주는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음(제4항)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승진임용의 기준·방법·절차·주기, 그 밖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 제2항 (청원경찰경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1. 청원경: 순경 2. 청원장: 경장 3. 청원사: 경사 4. 청원위: 경위 5. 청원감: 경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진)	○	—
2	안 제6조 제2항 (청원경찰경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산정 시 준용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을 다음 표과 같이 규정

[표 2] 현행법과 개정안비교

현행		개정안		
재직기간(년)	보수산정 직급	재직기간(년)	직급	보수산정 직급
15년 미만	순경	9년 미만	청원경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9년 이상 17년 미만	청원장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17년 이상 24년 미만	청원사	경사
30년 이상	경위	24년 이상 30년 미만	청원위	경위
		30년 이상	청원감	경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3년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청원경찰 9,616명이 2023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중도 퇴직 없이 재직하며, 재직기간이 31년에 도달한 경우만 다음연도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 재직기간이 31년에 도달한 경우만 다음연도에 퇴직하는 퇴직자수는 현행 법과 개정안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개정안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경위29호봉 대상자 중 50%만 경감29호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가정
 - 신규 채용자의 경우 추계기간 5년 동안 보수산정 시 순경 계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봉급의 차이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청원경찰은 순경3호봉으로 시작하여 재직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증가하며 직급이 상승하는 경우 1호봉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1.9%를 적용한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를 활용
 - 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다목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봉급인상시 이에 연동되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증액을 고려하며,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청원경찰 직급, 승진 및 경찰공무원 보수 적용(제5조의2·제6조)

- 2023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총 9,616명임

[표 3] 재직기간별 청원경찰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단위: 년, 명)

재직기간	인원	재직기간	인원
0~1	785	16	300
1	516	17	225
2	555	18	188
3	868	19	174
4	699	20	173
5	451	21	96
6	333	22	88
7	287	23	96
8	319	24	79
9	257	25	103
10	263	26	196
11	175	27	207
12	185	28	203
13	207	29	195
14	229	30	225
15	259	31	680
총계	9,616		

자료: 경찰청

- 2023년 12월 기준 재직년수별 청원경찰 수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관련 규정을 변경·적용하는 경우, 2026년 청원경찰 인건비는 2,623억 2,800만원으로, 현행법을 적용 시 인건비에 비해 185억 6,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됨

[표 4] 청원경찰 직급, 승진 및 경찰공무원 보수 적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년

재직기간	현행법				개정안				추가재정소요 (백만원, B-A)
	직급 호봉	대상자 수 (명)	봉급 (원)	인건비 (백만원, A)	직급 호봉	대상자 수 (명)	봉급 (원)	인건비 (백만원, B)	
9	순경12	333	2,770,243	14,022	경장11	333	2,933,681	14,849	827
10	순경13	287	2,846,355	12,499	경장12	287	3,019,035	13,257	758
11	순경14	319	2,920,183	14,253	경장13	319	3,101,065	15,135	883
12	순경15	257	2,990,791	11,760	경장14	257	3,179,461	12,502	742
13	순경16	263	3,059,012	12,309	경장15	263	3,254,846	13,097	788
14	순경17	175	3,125,778	8,369	경장16	175	3,327,635	8,910	540
15	경장17	185	3,327,532	9,419	경장17	185	3,395,440	9,611	192
16	경장18	207	3,392,014	10,743	경장18	207	3,461,273	10,962	219
17	경장19	229	3,454,004	12,102	경사18	229	3,872,256	13,567	1,465

재직 기간	현행법				개정안				추가재 정소요 (백만원, B-A)
	직급 호봉	대상자 수 (명)	봉급 (원)	인건비 (백만원, A)	직급 호봉	대상자 수 (명)	봉급 (원)	인건비 (백만원, B)	
18	경장20	259	3,513,087	13,921	경사19	259	3,940,268	15,614	1,693
19	경장21	300	3,569,366	16,383	경사20	300	4,004,958	18,383	1,999
20	경장22	225	3,623,568	12,474	경사21	225	4,066,741	14,000	1,526
21	경장23	188	3,675,071	10,571	경사22	188	4,124,993	11,865	1,294
22	경장24	174	3,724,809	9,916	경사23	174	4,181,480	11,132	1,216
23	경사24	173	4,150,225	10,985	경사24	173	4,234,955	11,210	224
24	경사25	96	4,199,963	6,169	경위24	96	4,529,435	6,653	484
25	경사26	88	4,247,623	5,719	경위25	88	4,583,533	6,171	452
26	경사27	96	4,287,808	6,298	경위26	96	4,632,959	6,805	507
27	경사28	79	4,325,397	5,228	경위27	79	4,675,324	5,651	423
28	경사29	103	4,361,635	6,874	경위28	103	4,716,132	7,432	559
29	경사30	196	4,396,420	13,184	경위29	403	4,754,655	29,299	16,115
30	경위30	207	4,695,053	14,870	경감29	203	5,128,050	15,908	1,038
31	경위31	203	4,729,215	14,688	경감30	—	5,165,534	0	-14,688
합계	—	4,642	—	252,756	—	4,642	—	272,012	19,256

주: 1. 개정안의 대상자수 중 경감29호봉은 개정안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경위29호봉 대상자 중 50%만 경감29호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가정

2. 인건비 총액은 봉급에 12를 곱하고, 재직년도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고려하여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6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보수를 추정하고,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월)한 공무원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산정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	19,256	20,455	22,141	24,140	25,947
기관부담금	2,544	2,722	2,967	3,257	3,525
합계	21,800	23,177	25,107	27,397	29,4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 관련 규정을 변경·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1,269억 5,300만원(연평균 253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청원경찰 직급, 승진, 보수	21,800	23,177	25,107	27,397	29,471	126,953	25,3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2023년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청원경찰 9,616명이 2023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중도 퇴직 없이 재직하며, 재직간이 31년에 도달한 경우만 다음연도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봉급에 연동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은 고려되지 않아,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